

장학금 지급 규정

<제정 1979.09.01.>, <34차 개정 2024.03.01.>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상명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 라 한다) 학칙 제67조에 의거 본 대학교의 교육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. <개정 2010.06.04., 2021.02.04>

제 2 조 (적용범위) ① 우리 대학교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교외장학기관(개인 포함)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. <개정 2010.06.04., 2021.02.04>

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0.06.04.>

제 3 조 (사무관장)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무는 학생처장이 관장한다. <개정 2009.09.01, 2010.06.04, 2018.10.28., 2023.02.20>

제 4 조 (심의) 장학금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 <개정 2010.06.04.>

제 2 장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

제 5 조 (교내장학금)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.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하며, 종류에 따라서는 지도교수 또는 관장 부서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10.06.04.>

1. 상명장학금 : 우리 대학교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신입학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다. <개정 2013.05.15., 2021.06.09>
2. 성적우수장학금 : 학년별 학과(전공)의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10.06.04., 2013.05.15>
3. 면학장학금 : 학업성적이 양호(면학A)하거나 경제 사정이 곤란한(면학B) 자에게 지급한다. <개정 2021.02.04.>
4. 디딤돌장학금 : 품행이 방정하고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. <신설 2012.02.04.>
5. 근로장학금 : 교내 기관 및 각 부서에서 근로를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. <개정 2010.06.04.>
6. 리더십장학금 :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학생자치활동기구 또는 부속기관 등에서 활동하

4-2-5 장학금 지급 규정

는 자 중 그 자격이 인정된 자에게 지급한다. <개정 2012.02.04, 2013.05.15., 2021.02.04>

7. 체육특기장학금 : 체육특기자로 특별전형되어 입학한 자 중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자에게 지급한다. <개정 2010.06.04.>

8. 국가보훈장학금 : 국가보훈장학금 지급 자격이 인정된 자에게 지급한다. <개정 2010.06.04.>

9. 형제·자매장학금 : 우리 대학교에 재적 중인 형제·자매학생의 경우 재학생 모두에게 지급하며, 형제·자매 중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동시 재학 중에 한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10.06.04., 2021.06.09>

10. 복지장학금 : 학교법인 상명학원이 임용한 우리 대학교 교(임)직원(법인, 각급 부속 학교 포함)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지급하되, 재직 중 사망 및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한 자 또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(명예)퇴직한 자의 경우 당시 재적 중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는 수업연한까지 지급한다. 다만, 위의 조건 외에도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0.06.04, 2013.12.27, 2015.03.01, 2021.06.09., 2023.08.01>

11. 삭제 <2017.11.07.>

12. 공로장학금 : 국가·사회 및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한다.

13. 특별장학금 :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대상이 있을 때 해당 부서의 추천으로 지급한다. <개정 2010.06.04.>

14. 외국인장학금 : 우리 대학교의 입학조건에 의해 선발된 외국인에게 지급한다. <개정 2010.06.04., 2021.06.09>

15. 나눔장학금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장애가족에게 지급한다.

16. 사회봉사장학금 : 사회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한다.

17. 향상장학금 :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 향상된 자에게 지급한다.

18. 동문장학금 : 우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·편입학한 동문 또는 동문의 자녀에게 지급한다. <개정 2021.06.09.>

19. 해외봉사장학금 : 교내·외 해외봉사단에 선발되어 해외봉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지급한다. <신설 2013.05.15, 개정 2016.03.01.>

20. 글로벌장학금 : 대학에서 시행하는 해외탐방 프로그램(해외어학연수, 해외연수, 해외인턴십, 해외교환학생, 해외복수학위 등)에 선발된 자에게 지급한다. <신설 2016.03.01.>

21.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한다. <신설 2010.06.04.>

제 6 조 (교외장학금) ① 외부 기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본 「장학금 지급 규정」에 따라나 장학금 지급 내용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 <개정 2010.06.04., 2012.02.04>

② 교외장학금 지급자가 해당 대학, 학과(전공) 및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했을 때는

해당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 및 학장의 추천을 받아 결정한다. <개정 2013.05.15.>

③ 해당 대학 및 학과(전공)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학 및 학과(전공)별 선발 순위에 따라 배정한다. <개정 2012.02.04., 2013.05.15>

④ 교외장학금 지급자가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.

⑤ 교외장학금 지급기관에서 등록금 초과수혜를 인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 <신설 2012.02.04, 개정 2013.05.15>

[제목개정 2010.06.04.][제목개정 2012.02.04]

제 7 조 (우선순위)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. <개정 2010.06.04.>

1. 총점이 높은 자
2. 전공학점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
3. 기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
4. 해당 학기 취득학점이 높은 자 <개정 2010.06.04.>
5. 경제 사정이 곤란한 자

[중전 제8조에서 이동 2010.06.04.]

제 8 조 (지급제한) ①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06.04, 2012.02.04., 2024.03.01>

1. 근로장학금, 사회봉사장학금, 리더십장학금, 해외봉사장학금 <신설 2010.06.04, 개정 2012.02.04, 2013.05.15, 2016.03.01., 2024.03.01>
2.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<신설 2010.06.04, 개정 2012.02.04.>

② 성적으로 선발하는 장학금의 중복수혜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지급한다. <개정 2010.06.04, 2013.05.15>

[제목개정 2010.06.04][중전 제9조에서 이동 2010.06.04.]

제 9 조 (자격의 제한) ①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않고는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다.

1. 복학생, 재입학생, 편입생 : 성적우수장학금, 면학A장학금 <개정 2010.06.04., 2021.02.04>
2. 삭제 <2021.02.04.>
3. 학칙 및 학생준칙에 따라 징계 처벌을 받은 자 <개정 2010.06.04., 2012.02.04>
4.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자격을 제한한 자

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.

1. 8학기 이상 이수한 자
2.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 <신설 2017.11.07.>
3.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

4-2-5 장학금 지급 규정

[중전 제10조에서 이동 2010.06.04.]

제 10 조 (장학금 지급 취소 및 회수)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었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 할 수 있다. 다만, 제 1호 해당자 중 등록을 필한 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0.06.04., 2022.02.18>

1. 휴학자 <개정 2010.06.04.>
2. 제적 또는 자퇴자 <개정 2010.06.04.>
3. 학칙 및 학생준칙에 따라 징계 처벌을 받은 자 <개정 2010.06.04, 2012.02.04>

[중전 제11조에서 이동 2010.06.04.][제목개정 2022.02.18]

제 11 조 (수혜기간)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, 한 학기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[중전 제12조에서 이동 2010.06.04.]

제 12 조 (성적기준) ① 장학생 선발에 따르는 성적의 기준은 직전 학기의 것에 의한다.

② 학업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직전 학기 취득 학점이 15학점(4학년 9학점) 이상인 자에 한한다. <개정 2010.06.04., 2016.03.01>

③ 제2항 이외의 장학금은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「학사에 관한 규정」 제16조 제3항에 의한 최소 신청학점 이상 취득자(학사경고자 제외)에 한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10.06.04, 2012.02.04, 2013.05.15, 2017.11.07, 2021.02.04, 2023.02.20>

[중전 제13조에서 이동 2010.06.04.]

제 13 조 (지급방법) ① 학생처는 확정된 장학생의 장학금을 지급 시기에 따라 등록금고지서에 학비감면으로 처리하거나 계좌입금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 학생에게 지급한다. <개정 2009.09.01, 2010.06.04, 2018.10.28., 2023.02.20>

② 교외장학금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기관 또는 기탁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. <신설 2010.06.04>

[중전 제14조에서 이동 2010.06.04.]

제 14 조 (자격상실)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정해진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 자격을 상실한다. 다만, 미등록 군휴학자는 그 자격을 유지하되 장학생 선정 당시의 장학금 지급액과 동일 금액을 복학 시 지급한다. <개정 2010.06.04, 2021.02.04>

[중전 제15조에서 이동 2010.06.04.]

제 15 조 (운영세칙)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[중전 제16조에서 이동 2010.06.04.]

부 칙

이 규정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이미 추천 선정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추천 선정된 것으로 본다.

[개정 2012.02.04.]

부 칙

① 이 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추천 선정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추천 선정된 것으로 본다.

[개정 2012.02.04.]

부 칙

이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4-2-5 장학금 지급 규정

① 이 규정은 199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이미 추천 선정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추천 선정된 것으로 본다.

[개정 2012.02.04.]

부 칙

① 이 규정은 199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 시행에 따라 폐지된 교원자녀장학금은 1992년도 이전 입학자에 한하여는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③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이미 추천 선정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추천 선정된 것으로 본다.

[개정 2012.02.04.]

부 칙

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199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제10조 제2항은 1995학년도 장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제5조 제7항 및 제12조 제2항에 관한 사항은 199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02학년도 제1학기 장학생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이미 추천 선정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추천 선정된 것으로 본다.

[개정 2012.02.04.]

부 칙

이 규정은 2006학년도 제2학기 장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본부칙신설 2009.09.01.]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[본부칙신설 2010.06.04.]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[본부칙신설 2012.02.04.]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[본부칙신설 2013.05.15.]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[본부칙신설 2013.12.27.]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[본부칙신설 2015.03.01.]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성적기준에 따른 경과조치)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2항은 2016학년도 1학기 성적부터 적용한다.
[본부칙신설 2016.03.01.]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.
②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 국가고시장학금은 2017학년도 2학기까지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, 2018학년도 1학기부터 폐지한다.
[본부칙신설 2017.11.07.]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[본부칙신설 2018.10.28.]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[본부칙신설 2021.02.04.]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[본부칙신설 2021.06.09.]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[본부칙신설 2022.02.18.]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[본부칙신설 2023.02.20.]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[본부칙신설 2023.08.01.]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[본부칙신설 2024.03.01]